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33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부승찬 · 이언주 · 박선원
김한규 · 한준호 · 진선미
허영 · 김영환 · 안태준
윤종균 · 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안보·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또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과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방핵심기술의 기획·관리·평가’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부 등 타 부처의 전문기관과 달리 법인격이 없는 부설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독립적 지위가 미흡하고, 이에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고, 설립등기·정관·수행사업 등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33조).
- 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참석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4호).
- 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임직원에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 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승격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행사업에 맞게 조정함(안 부칙 제2조).

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에 따라 설립준비 및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을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제32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으로 한다.

제5장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과 방위산업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

3.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4.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정부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⑨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제2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을 “제32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2.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

전의 촉진 등

3. 제1항제7호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을 “제32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장”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관한 지원

2.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③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한다.

제3조(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준비) ①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채권·채무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방기술품질원이 소속기구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의 명의로 한 행위와 관련된 채권·채무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자산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승계한다.

②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 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정

관이 정하는 기능·조직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행한 행위 중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방위사업청장이 한 것으로 보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수행 중인 사업 및 체결한 계약·협약상 지위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관한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 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 3. (생략)</p> <p>4. 국방과학연구소장, <u>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u>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p> <p>5.·6. (생략)</p> <p>⑤ (생략)</p> <p><u><신 설></u></p>	<p>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제32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u> -----</p> <p>5.·6.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u>제32조의3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u> ① <u>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과 방위산업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설립한다.</u></p> <p>② <u>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u></p> <p>③ <u>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p>

④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

3.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4.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정부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생략)

②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p>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 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 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p>	<p>----- ----- ----- ----- ----- -----.</p>
--	---